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공제사업 규정 보완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03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공제사업 규정 보완	3
※ 참고자료	9
1. 공제사업 관련 입법례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2. 8.
3. 회 부 일: 2025. 1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타 공제사업 관련 법률은 공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제규정의 제·개정,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체육인 공제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의 공제사업 규정 보완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②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을 위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③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u>공제사업</u> (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	2. ----- <u>공제사업</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u>

	<u>설치하여야 한다.</u> <u>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 <u>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u> <u>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u> <u>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填)</u> <u>2. 공제사업의 시행</u> <u>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u> <u>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검토사항

공제사업이란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뜻하며, 「체육인 복지법」상 공제사업은 ①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사업, ② 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운영에 관련된 공제 사업, ③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 사업, ④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을 의미함¹⁾.

현행법은 체육인복지를 위해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복지 관련 사업²⁾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 공제사업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육진흥공단은 별도의 체육인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1)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사업
2. 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운영에 관련된 공제 사업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2) 「체육인 복지법」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
3.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4. 체육인복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이 체육인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여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다수의 공제회의 경우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등 별도의 법률을 통해 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공제사업도 법률에서 준비금, 이익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³⁾.

따라서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안정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안 제18조제4항은 공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사업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준비금의 적립 의무와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적립하여 장래의 손실에 대비하고, 공제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로서 공제사업의 장기적 안정성과 재정적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8조의4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3) 참고자료: 공제사업 관련 입법례 참고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영리 목적의 ‘보험업’과 구별⁴⁾되는 복지 목적의 상호부조 제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써, 공제사업의 공공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위해 전담기관 내에 공제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공제사업의 전담기관을 규정한 상황에서 재차 전담기관 내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그 전담기관의 자율에 맡길 부분으로 보여지는바, 안제18조제3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제사업 운영의 효율적 추진,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보험업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공제회의 구성 목적과 신분 및 소득이 불안정한 체육인 집단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⁵⁾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공제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공제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구성원의 사고·손해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

5) 공제사업을 위한 자본금 모집계획 수립, 지원 대상 명확화, 유사 사례 비교 등 사전 준비 및 관련 조사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자료: 공제사업 관련 입법례

1 공제규정 제정 의무 (안 제18조제4항 관련)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u>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u>공제규정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57조(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u>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운영) ① 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④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u>공제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공제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기공사 공제조합법	제9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u>공제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건설 폐기물법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u>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여객 자동차법	제64조(공제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u>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물 자동차법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u>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회계처리 근거 (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관련)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u>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u>
경찰 공제회법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u>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u>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u>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u>
교정 공제회법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u>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u>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u>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5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u>
군인 공제회법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u>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u>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u>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u>
대한소방 공제회법	제2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u>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회계처리하여야 한다.</u> 제22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u>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u>

대한 지방행정 공제회법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u>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u>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u>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u>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u>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u>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u>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u>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법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u>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u>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u> 1. 손실금의 보전(補填)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전기공사 공제조합법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u>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리)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여객 자동차법	제64조(공제사업)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u>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u>
화물 자동차법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u>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u>

3 보험업법 적용배제 (안 제18조의4 관련)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u>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영유아 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⑩ <u>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건설 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u>손해공제사업</u>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u>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건설 폐기물법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u>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u>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u>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전기공사 공제조합법	제9조(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객 자동차법	제64조(공제사업)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화물 자동차법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